스페인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인사에 관한 규칙(下)

제3장 헌법연구관

제1절 헌법연구관의 선발과 임명

제65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집단의 지원자 선발은 공개채용시험을 통해 이루어지고, 사전에 관보를 통해 공고한다. 공고에는 채용 인원수, 지원서 제출기한, 공개채용시험에 적용되는 규정을 명시한다.

제66조

공개채용시험의 응시를 위해서는 법학 학사의 요건으로 A그룹 범주나 집단 또는 법원 또는 검찰에 속했어야 하고,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로 기소되거나 처벌되어 유죄로 선고받지 않았어야 하며(복권되거나, 무죄 또는 기각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공공기능의 수행과 관련하여 무자격 또는 정지를 받아서 안 되며, 사법 또는 징계절차에 의해 공공기관 또는 국가의 헌법기관 또는 자치주의 헌장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파면되어서 안 된다.

제67조

1. 시험 단계에서는 지원자의 학문적, 직업적 가치를 평가한다. 또한 인사위원회(Tribunal calificador)는 헌법연구관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득이 되는 다른 장점도 고려한다. 인사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된 장점을 증명할 수 있는 시험을 수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시험은 두 단계에 대해 최대 총점의 70%로 산정되고, 시험을 통과하려면 각각의 경우 35%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제68조

시험은 두 가지 단계로 구성된다.

a) 첫 번째는 공개채용시험 공고시 공개되는 최소 50개에서 최대 100개 주제 중에서 추첨된 주제에 관해 서술하는 시험이다.

b)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가 심리할 수 있는 가정적인 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서술하는 시험이다.

상기 시험을 위해 지원자에게 주어지는 최대시간은 각각의 경우 4시간, 6시간이다.

제69조

전조에 따른 두 가지 단계에 관한 서술시험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이후 지원자는 인사위원회의 공개 회의에서 발표하며, 인사위원회는 지원자에게 구두로 질문을 하거나 필요하다면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70조

각 단계가 종료되면, 인사위원회는 합격자 명단과 이들이 획득한 점수를 공개채용시험 기준에 따라 게시한다.

제71조

인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다만 다른 재판관에게 위임 가능) 및 위원 4명(재판관과 헌법연구관 중에서 전원재판부에 의해 선출)으로 구성된다. 인사위원회의 구성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이 있어야 한다.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인사위원회 구성원들 가운데 3명의 참석으로 족하고, 헌법재판소장이 부재시 재직 연수가 높은 재판관이 주재하며, 동일한 재직 연수라면 연령이 높은 재판관이 주재한다.

제72조

공개채용절차가 종료되면 인사위원회는 획득한 총점의 순서대로 합격자를 공개하고, 회의 기록을 첨부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 어떤 경우든 이 목록에는 채용 인원보다 더 많은 합격자가 포함될 수 없다.

제73조

공개채용시험을 통과하여 합격자 명단에 있는 자는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연구관으로 임명한다. 헌법연구관은 사무처장 앞에서 선서 또는 약속을 하고 취임함으로써 헌법재판소 소속 헌법연구관이 된다.

제2절 헌법연구관의 권리와 의무

제74조

1. 1월 18일자 조직법 1/1985에 따른 겸직금지는 헌법연구관에게 적용된다.

2. 대학에서의 공동 강의는 본 규칙 제2조 g)에 의해 사무처장에 사전 보고를 거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승인되어야 한다. 어떤 경우든 상기 교육활동을 행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업무에 방해되지 않아야 한다.

제75조

공무원 자격 상실 및 행정제재와 관하여, 이하 조문에서 정하고 있는 세부사항과 함께, 헌법연구관에게 사법행정 직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제76조

1. 헌법연구관 소속 구성원은 임명되고 3년이 경과될 때까지 자발적 휴직을 신청할 수 없고, 이 휴직기간은 2년 미만이거나 연속해서 10년 이상이 될 수 없다.

2. 자발적 휴직 상태인 헌법연구관의 복직을 위해서 신청자는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음을 나타내는 사항을 미리 제출해야 한다.

제77조

헌법연구관이 파면되고 나서 그의 책임이 소멸되고 경우에 따라 범죄기록이 취소되는 경우, 그의 복직에 관한 결정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권한에 속한다.

제78조

1. 연령에 의한 법정퇴직은, 법관 및 재판관의 경우에 있어 확립되어 있는 연령에 헌법연구관이 달하면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공표한다.

2. 영구적 장애로 인한 퇴직은 관계 문서를 미리 검토하여, 사무처장의 사전 보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장이 결정한다.

제79조

휴가, 인가, 허가 제도는 헌법재판소 직원을 위해 수립된 일반 제도에 따른다.

제80조

1. 헌법연구관의 급여는 기본보수와 수당으로 구성된다. 기본보수는 법관 직렬의 법원 구성원에 상응하여 정해진다.

2. 직군수당은 헌법연구관과 국장의 직무 수준, 전문적인 난이도, 경력, 책임 및 겸직금지 사항에 따라 일제히 지급된다.

3. 부서의 장, 국장, 비서실장을 수행하는 헌법연구관은 특정수당을 받는다. 사무처장이나 사무차장, 또는 두 직을 연이어 3년 이상 수행한 다음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의 직을 유지하는 자는, 부서의 장을 수행하는 헌법연구관과 동일한 특정수당을 받는다.

제81조

정규직 헌법연구관의 사회보장제도는 법원 구성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른다. 지명된 헌법연구관은 원래의 기관에 해당되는 규정에 따른다.

제82조

업무에서 퇴직하는 경우, 헌법연구관은 법원 구성원에 대한 연금수급권 및 사회보장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금을 본인이 또는 가족이 받는다. 이를 위해 적용되는 지급액은 매년 제정되는 국가일반예산법에 따른다.

제83조

업무로 인한 보상과 관련하여 사무처장은 장관이 있는 다른 부처의 차관에 적용되는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헌법연구관은 법원 구성원에 대해 수립된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제3절 징계

제84조

1. 헌법연구관은 이 규칙에 따라 권리의 보장을 받고 징계 책임의 대상이 된다.

2. 제재절차는 사무처장의 동의하에, 헌법재판소 또는 헌법재판소장 또는 헌법재판소 부소장의 제의나 명령으로 개시된다.

3. 사법행정 직원의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자체의 입법으로 규정된 것이 (헌법연구관에게) 적용된다.

제85조

1. 헌법연구관에 대한 징계사유는, 매우 중대한 징계사유, 중대한 징계사유 및 경미한 징계사유로 분류된다.

2.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경미한 징계사유는 2개월, 중대한 징계사유는 6개월, 매우 중대한 징계사유는 1년이 지나면 각각 시효로 소멸한다.

제86조

1. 다음은 매우 중대한 징계사유로 간주된다.

a) 헌법재판소조직법에 따른 겸직금지의 위반

b) 임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이를 부당하고 반복적으로 지연

c) 비밀준수의무의 위반

d) 8일 이상 헌법재판소에 무단결근

e) 명백히 불법한 보고서의 제출이나 연구의 준비, 또는 사실 확인이나 법적, 법리적 또는 선례 인용을 의도적으로 있는 그대로 하지 않는 경우

f)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반복 또는 재범

g) 고의에 의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2. 다음은 중대한 징계사유로 간주된다.

a) 재판관 또는 사무처장에 대한 무시

b) 3일 이상 8일 미만의 무단결근

c)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공개적 비판 또는 이의 표명(법리적 또는 학술적 목적인 경우는 제외)

d) 매우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신중의무 또는 비밀의무 위반

e) 검찰, 호민관 또는 다른 공공기관의 대표, 또는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변호사 및 대리인에 대한 무시

f) 헌법연구관의 기능을 행하면서 권한을 초과 또는 남용

g) 헌법연구관 또는 관리자 지위에 내재된 의무와 책임을 준수하지 않아서, 의도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업무를 방해 또는 권위를 침해하여 심각한 것

으로 분류되는 경우

h) 경미한 징계사유의 반복 또는 재범

3. 다음은 경미한 징계사유로 간주된다.

a) 임무를 행하는데 있어 지연, 태만 또는 부주의

b)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반복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

c) 재판관 또는 사무처장, 검찰총장, 호민관, 다른 공공기관의 대표 또는 변호사나 대리인 또는 헌법재판소에 처리할 사안이 있는 자에 대한 무례나 경시

d) 심판국장과 헌법재판소의 다른 직원에 대한 경시

e) 기타 심각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헌법연구관으로서의 의무와 책임 위반

제87조

1. 전조의 징계사유로 인해 부과될 수 있는 제재로는 주의, 견책, 60일 이내의 감봉(기본급의 75%와 가족수당 전액은 감봉 대상에서 제외), 1개월에서 1년까지의 정직 그리고 파면이 있다.

2.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해서 주의나 견책이, 중대한 징계사유에 대해서 견책이나 감봉이, 매우 중대한 징계사유에 대해서 30일 이상의 감봉, 정직 및 파면의 제재가 부과된다.

제88조

사무처장은 주의를, 헌법재판소장은 견책, 감봉 및 정직을, 전원재판부는 파면의 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가진다.

제89조

매우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헌법연구관의 직무 수행 계속이 헌법재판소 업무에 방해가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헌

법재판소장은 징계절차 담당 공무원의 제안 또는 직권에 의한 판단에 의해 예방적으로 해당 헌법연구관에 대한 임시 정직을 명할 수 있다. 임시 정직에 해당되는 경우, (헌법연구관은) 기본급의 75%와 가족수당 전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90조

1. 헌법연구관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된 제재는 위반행위의 사유를 기재하여 인사기록에 표시된다.

2. 주의의 제재는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면 취소된다. 견책에 관한 기록은 부과된 날로부터 1년, 감봉에 관한 기록은 부과된 날로부터 2년, 정직에 관한 기록은 부과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면 취소된다.

3. 취소는 전항에 따른 해당 기간 동안 다른 제재 부과로 이어지는 다른 징계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취소 당시에 다른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면, 그것이 종결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제91조

헌법연구관에 적용되는 징계제도는 사무처장에게도 적용되고, 사무처장에 대한 주의는 헌법재판소장이 부과한다.

제4장 파견 공무원

제1절 임명

제92조

1. 경력채용은 헌법재판소장이 평가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결정한다. 자유로운 임명 절차에 있어 임명 제안은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 또는 부서의 장의 사전 보고를 거쳐 사무처장이 행한다.

2. 헌법재판소에서의 임무는 사무처장으로부터 공무원으로서 임명되면서 정식으로 개시된다.

제93조

1. 파견 종료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파견 공무원의 의사 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파견 후 2년이 경과되면, 이 장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속해있던 직책으로 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사무처장에게 제출하고, 사무처장은 담당하는 부처에 공문을 통해 이를 전달한다.

또한 파견 후 2년이 경과되면, 해당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은 자신이 속해있던 집단 내 다른 직책에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다.

3. 이 규칙 제14조 c)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헌법재판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제안으로 다음에 해당되는 공무원을 원래 소속기관으로 복귀하게 하여 파견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

a) 해당 공무원이 맡은 특정 직위가 헌법재판소에서 없어지고, 유사한 성격의 직위에 대해 파견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b) 이 규칙 제97조에 따라 파견 공무원이 중대한 또는 매우 중대한 사유로 의한 징계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제2절 파견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제94조

원래 소속기관의 구분 없이, 헌법재판소로 파견 공무원은 사법행정 직원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이것이 헌법재판소에 관련된 법, 이 규칙, 헌법재판소가 정한 다른 규범, 기관에 관련된 계약, 의결 및 지침의 우선 적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공기능 분야에 관한 법은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제95조

휴가, 인가 내지 허가는 전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일반 규범에 따르고, 인가 내지 허가를 부여하는 권한은 사무처장에 있다. 예외적으로 학업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한 경우, 사무처장의 보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장이 인가 내지 허가를 할 수 있다.

제96조

이 장에 해당되는 공무원의 보수는, 일자리 목록과 관련된 규정 및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전원재판부가 채택하는 의결에 따른다.

1. 기본급은 공무원이 속한 집단 또는 범주에 해당되는 것을 가리킨다.

2. 직군수당은 각 일자리에 있어서 책임의 정도, 경력 및 전문적인 난이도에 따라 일제히 지급된다.

3. 전원재판부는 일자리 목록과 관련된 개별적인 요건을 고려하여, 해당 일자리에 대한 특정수당을 정한다.

4. 전원재판부는 원래 공무원의 소속기관을 감안해 적절한 조정수당을 정할 수 있다.

제97조

1. 파견 공무원의 징계는, 이 조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가 아닌 한, 사법행정 직원에 상응하여 정해진다.

2. 어떤 경우든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비밀의무 위반 및 부정직함은 매우 중대한 징계사유로 간주된다.

3. 징계절차는 사무처장의 결정, 상위의 제안 또는 결정, 또는 심판국장이나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속한 업무 또는 부서의 장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4. 사무처장은 주의, 경고, 견책, 감봉 및 정직의 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가진다.

5. 징계의 결과로 적용되는 처분이 파면인 경우, 사무처장의 공문을 통해 해당 부처에 이러한 내용이 전달되고, 징계 관련 문서가 처리되는 동안 공무원의 업무는 잠정적으로 정지된다.

제5장 (임시) 공무원

단일 절(Capítulo Único)

제98조

1. 임시 직원은 헌법재판소의 일자리 목록 규정에 따라 자유롭게 임명되고 퇴직할 수 있다. 퇴직은 어떤 경우든 기관에서의 신임 또는 특별 조언의 기능이 종료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2. 임시 직원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 공무원이 받는 것과 동일한 보수를 받는다.

3. 임시 직원은, 적용 가능하고 임시적 특성에 부합되는 범위에서, 직업 공무원을 위해 확립된 규범에 따라 규율된다.

제99조

(폐지)

제100조

(폐지)

추가규정 첫째

헌법재판소에 소속되지 않은 다른 공공행정 직원이, 헌법재판소에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각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른다. 다만 본 규칙 제15조의 내용과 헌법재판소가 예산상 자율권을 행사하여 이 직원에게 특정 보

수를 인정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추가규정 둘째

1.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최소 3년 간 직무를 수행하였으면, 직을 수행하는 3년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하여, 직무 종료시 받은 것과 동등하게 1년 간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면직된 재판관은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보수의 일시금 또는 분할 수령을 선택할 수 있다.

3. (재판관이) 사망한 경우, 이 보수는 동일한 범위와 내용으로 배우와 자녀에게 절반씩 승계된다.

4. 3월 30일자 법 3/2015 추가규정 첫째의 내용에 따라, 헌법재판소 구성원(miembros)이 면직 후 연금이나 보수를 받기로 선택하였다면 법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직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연금이나 보수를 받는 것을 포기하고 공적 또는 사적 활동을 할 수 있다.

추가규정 셋째

10월 30일자 공무원 기본법의 수정을 승인한 위임입법 5/2015 제87조 제3항 및 12월 27일자 법 31/1990 제33조 제2항의 내용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의 비서실장은 고위직으로 간주된다.

경과규정 첫째

전원재판부에서 지명한 재판관 2명, 사무처장, 관리국장 및 사무처장이 지명한 헌법연구관 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 규칙이 발효된 후 1년 이내에 다음을 준비하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제출한다.

a) 헌법재판소 직무와 관련된 초안

b) 일반규정을 헌법재판소의 요건에 부합되도록 하여, 헌법재판소 직원을 대표하는 기관, 경우에 따라 협상 테이블에 관련된 규정의 초안. 해당 규정

이 발효되지 않는 한, 인사 관련 규정이 헌법재판소에 계속 적용된다.

어느 초안을 전원재판부에 상정하기 전에, 위원회는 해당 초안의 검토 및 통지를 위해 직원의 대표에 제출한다. 어떤 경우든 위원회에 속한 재판관과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업무 상황에 관해 정기적으로 전원재판부에 보고한다.

경과규정 둘째

이 규칙 제49조는 규칙의 발효 당시 근로제도에 따라 고용된 자들이 헌법재판소에 계속해서 업무를 제공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새로운 고용계약은 어떤 경우든 앞서 언급된 규정에 따른다.

경과규정 셋째

일자리 목록이 확정되지 않는 한, 이 규칙 발효 당시에 발생하는 헌법연구관의 공석은 이 규칙 제53조 제5항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임시직 배정을 통해 보충한다.

경과규정 넷째

이 규칙 제61조 제5항은, 일자리 목록이 확정되지 않는 한, 헌법재판소 직원의 공석을 채용하고 준비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최종규정 첫째

1981년 1월 15일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인사에 관한 규칙은 폐지된다.

최종규정 둘째

본 규칙은 «관보»에 공고한 날에 발효한다.